

행정구역	계		시설용지지구		비 고
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
					3. 변경용도지역 : 준농림지역 : 0.005km <sup>2</sup> → 준도시지역(시설용지지구) : 0.005km <sup>2</sup> 4. 면적 : 0.005km <sup>2</sup> (5,157 m <sup>2</sup> ) 5. 변경목적 : 노인복지시설 부지 확장 6. 관리번호 : 29-20
<p><b>○파주시고시제200-101호</b></p> <p>2000년10월16일</p> <p>파 주 시 장</p> <p>가. 위 치 : 경기도 파주시 문산시 운천리 산20-1 일원</p> <p>나.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: 별항</p> <p>다.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면 : 실음생략</p> <p>라. 국토이용계획</p> <p>○국토이용계획 : 별항</p> <p>○국토이용계획 : 실음생략</p>					
<p>1. 경기도 파주시 문산시 운천리 산20-1번지 일원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를 조성코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파주시(도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.</p>					
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

○용도지역

(단위 : km<sup>2</sup>)

행정구역	합 계		준도시지역		준농림지역		비 고
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
파 주 시	682.673	682.673	11.969	12.013	250.237	250.193	
문 산 읍	47.350	47.350	0.777	0.821	23.569	23.525	

○용도지구

행정구역	합 계		취락지구		비 고
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기 정 변 경	
파 주 시	3.234	3.278	3.234	3.278	○전 명 :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
문산읍	0	0.044	-	0.044	○변경용도지역 : 준농림지역(0.044km <sup>2</sup> ) → 준도시지역(취락지구)(0.0444km <sup>2</sup> ) ○변경사유 :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조서에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○관리번호 : 22-43

토지이용계획조서

1. 용도구획계획

구	분 면	적(m <sup>2</sup> )	구 성 비(%)
총 부 지 면 적		44,235	100.0
주 거 지			
소 계		30,941	69.9
단독주택용지		30,209	68.3
공동주택용지		-	
근린생활시설용지		732	1.6
녹 지			
소 계		3,757	8.5

구	분 면	적(m <sup>2</sup> )	구 성 비(%)			
소 공 원		391	0.9			
시 설 녹 지		3,366	7.6			
도 로		9,537	21.6			
2. 도로계획 (단위 : m)						
		계	소 로			
구분	폭원연	장면적	폭원연	장면적		
계	6~8	1,424.52	9,537	6~8	1,424.52	9,537
단지 내 도로	6~8	1,424.52	9,537	6~8	1,424.52	9,537

3.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

구	분	면적(m <sup>2</sup> )	비	고
계		12,311		
공공시설용지		10,054	도로, 공동주차장	
보건위생시설		458	간이오수처리장	
사회복지시설		488	마을회관	
주민편익시설		1,311	공동판매장, 놀이터	

4. 개발사업의 시행자,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

가. 개발사업의 시행자

-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
- 성 명 : 파주시

나. 시행기간

-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~ 2000년

다. 시행방법

- 농어촌주택개발사업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

라.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

~~~~~

**◎하남시고시제2000-63호**

1. 하남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, 폐기물처리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0-232호(2000. 9.28.)로 결정 고시되었기.

2. 하남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, 폐기물처리시설)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6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00년10월16일

하 남 시 장

가. 하남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 및 지

형도면고시조서

○구 분 : 폐지

○시설명 : 수질오염방지시설

○시설의 세분 : 분뇨처리시설

○위 치 : 하남시 신장동 240-4번지 일원

○면 적

-기 정 : 4,704m<sup>2</sup>

-변 경 : (감)4,704m<sup>2</sup>

나. 하남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

○구 분 : 신설

○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

○시설의 세분 : 중간처리시설

○위 치 : 하남시 신장동 240-4번지 일원

○면 적 : 12,610m<sup>2</sup>

다. 관계도면 : 따로붙임(관보계재는 생략)

라. 공람장소 : 하남시청 도시건축과(0347·796-5401)

~~~~~

**◎단양군고시제2000-29호**

매포도시계획지적승인

1. 매포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및 매포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00년10월16일

단 양 군 수

○매포도시계획지적승인조서 : 별항

○매포도시계획지적승인도 : 붙임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매포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고시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(m)	기	점 중	점	사용형태	비 고
	등급	종류	번호	폭원							
기정	소로	3	11	6	국지도로	135	소로 2-7	중로 3-3		일반도로	
							평동리 1270	평동리 224-1			
변경	"	3	11	6	"	140	"	"		"	선형변경
기정	"	3	50	6	"	66	중로 3-3	소로 3-11		"	
							평동리 244-2	평동리 966			
변경	"	3	50	6	"	74	"	"		"	선형변경

**◎완주군고시제2000-166호**

우리군 삼례도시계획시설(우석대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,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

3항,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지적을 승인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도시개발과와 삼례읍사무소에